

**제2564호**  
**2018. 02. 07.**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 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  
 전화: 3396-4952  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- 고 시
  - 제2018- 9호 :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..... 2
  - 제2018-10호 :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..... 3
- 공 고
  - 제2018-78호 : 도시관리계획(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을 위한 재열람공고 ..... 4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  
 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

## 고 시

●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9호

## 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02월 0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73외 1필지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22-10	2018.02.07.	세종대로1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264 외 2필지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11	2018.02.07.	동호로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4.22.	한강변의 옛 지명인 동호 지명을 인용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16-19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길 5-8	2018.02.07.	청구로3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1.03.02	청구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[www.junggu.seoul.kr](http://www.junggu.seoul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0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02월 0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 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07	2018.02.07.	건물철거
2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04-1	2018.02.07.	건물말소
3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06-1	2018.02.07.	건물말소
4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86-7	2018.02.07.	건물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[www.junggu.seoul.kr](http://www.junggu.seoul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8-95호

**도시관리계획(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을 위한 재열람공고**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810호(2016.12.3)로 열람공고하고 2017년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“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을지로5가 275-3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 결정(변경)(안)”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, 「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
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e-mail : evejy@junggu.seoul.kr 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.

2018년 2월 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열람기간 :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심재생과 (TEL : 02-3396-5775 / FAX : 02-3396-8781)

다. 열람내용 :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  - 가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  - 나)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
    - 건축물 용도 계획 : 변경
      - 불허용도 : 변경없음
      - 권장용도 : 변경없음
      - 1층 권장용도 : 변경없음

■ 전층 지정용도 : 신설

구 분	적용지역 (도면표시)	전층 지정용도		비 고
		기 정	변 경	
신 설	(a) 을지로5가 275-3일대 <sup>주2)</sup>	-	·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(객실비율 80%이상)	

주1)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‘전층’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(주차장제외)의 70% 이상이어야 함

주2) 을지로5가 275-3일대 (을지로5가 84-7, 275-4, 275-3, 275-19, 275-16, 275-10, 160-3, 160-2, 160-1, 141, 139-2, 139-1, 138, 137-2, 136, 136-2, 127-2, 127-1)

- 건폐율 계획 : 변경없음
  - 용적률 계획 : 변경
- 용적률

구 분	위 치	용적률			비 고
	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
기정	을지로5가 275-3일대	500%이하	600%이하	법적 2배이하	
변경	을지로5가 275-3일대 <sup>주3)</sup>	500%이하	690%이하	법적 2배이하	

주1) 「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

주2)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” 적용

주3) 을지로5가 275-3일대 (을지로5가 84-7, 275-4, 275-3, 275-19, 275-16, 275-10, 160-3, 160-2, 160-1, 141, 139-2, 139-1, 138, 137-2, 136, 136-2, 127-2, 127-1)

- 높이 계획 : 변경없음

다)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라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
○ 교통처리계획 : 변경

구 분		계획내용	비고
기정	차량출입 불허구간	· 간선도로(장충단로, 동호로, 다산로, 을지로, 퇴계로, 청계천로)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·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	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『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』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
변경	차량출입 불허구간	· 간선도로(장충단로, 동호로, 다산로, 을지로, 퇴계로, 청계천로)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- 동호로 일부구간(을지로5가 275-3)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·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	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『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』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

마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라. 변경사유

- 대상지가 위치한 동대문 일대는 DDP, 쇼핑센터 등이 입지하여 명동과 함께 외국관광객 증가로 현재 객실수요가 부족한 실정임
- 따라서 금회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을 완화를 통해 양질의 숙박시설을 공급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마. 관계도서 : 계재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